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기로 인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적용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 인정 기준일 변경(안 제63조)

- 1)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4항제3호 중 “해당한다”를 “해당한다. 다만,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) ① ~ ③ (생략)	제63조(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(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)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한다. 다만,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----- -----
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7